

2026년 장기요양급여 (주야간 보호센터)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마실데이케어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 본 내용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

1.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

- 1) 이용정원 :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 준수
- 주·야간보호(재가급여) : 9명
- 2) 입소대상 :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(재가급여) 판정을 받은 자
- 3) 모집방법 :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

2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1) 계약 당사자 : 마실데이케어센터 센터장, 신원인수인(주 보호자)
★계약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.
- 2) 계약기간
 - 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한다.
 -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 등)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 -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- 3) 계약목적 :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주간보호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4) 계약방법 :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
 - ① 이용자가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가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 - 나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 - 다.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
 - ②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시설에서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5) 신원 인수인의 권리, 의무
 - ①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유지 및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.
 - ②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‘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 신청

서'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이용자가 월5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보호자는 퇴소유보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보호자는 기관 이용 시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⑥ 기타 기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.

6)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
-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
-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 일 전에 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
- ④ 시설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통고한다.
 - 가.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
 - 나.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
 - 다. 건물,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, 파손, 멸실 하였을 경우
 - 라.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 - 마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7) 계약의 정지

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을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.

3.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

- ① 이용료의 기준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」, 「노인복지법」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- ② 주야간보호,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6%와 9%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 단, 주야간보호는 비급여항목으로 식사재료비(1식 당 4,000원) 및 간식비(1식당 1,000원)를 산정한다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). 이용료의 세부 내역은 별표1과 같다.
- ③ 장기요양서비스(주야간보호)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

4. 기타 부담액

-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(단,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가 사전에 협의한다).
- ②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 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제공

한다.

- ③ 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, 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.
- ④ 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준비한다.
- ⑤ 그 외 계약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5.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

-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)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 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(변경신청서 제출)을 하여야 한다.
- ③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-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이용자의 등급 변경 시,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,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, 서비스 제공내용 및 횟수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다

6.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

- 1)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.
- 2)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3) 상해보험에 의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.

별표1

주야간 보호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

○ 등급별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 월 한도액(원) 2026.01.01.기준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 2026.01.01.기준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미만	41,820	38,720	35,740	34,120	32,490	32,49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6,060	51,930	47,940	46,300	44,650	44,650
8시간 이상~ 10시간 미만	69,730	64,590	59,640	58,010	56,360	56,360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76,820	71,160	65,750	64,090	62,460	56,360

○ 주야간보호 비급여 비용

- 식대료: 4000원/1식
- 간식비: 1000원/1식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%
의료보호(경감)대상자	6%, 9%
기초생활수급권자	0%